

부속서 10-나 수용

당사자들은 다음에 대한 당사자들의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

1. 당사자의 행위 또는 일련의 관련 행위는, 그것이 적용대상투자에서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권 또는 재산상 이익¹을 침해하지 않는 한, 수용을 구성할 수 없다.

2. 제10.13조(수용)는 두 가지 상황을 다룬다.

가. 첫 번째 상황은 직접수용으로서,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를 통하여 적용대상투자가 국유화되거나 달리 직접적으로 수용되는 경우이다. 그리고

나. 두 번째 상황은 당사자의 행위 또는 일련의 관련 행위가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용에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이다.

3. 당사자의 행위 또는 일련의 관련 행위가 특정한 사실 상황하에서 제2항나호에 언급된 유형의 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의 결정은 여러 요소 중에서 다음을 고려하는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요구한다.

가. 정부 행위의 경제적 영향. 그러나 당사자의 행위 또는 일련의 관련 행위가 투자자의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그러한 수용이 발생했음을 입증하지 않는다.

나. 정부 행위가 계약, 허가 또는 그 밖의 법적 문서에 의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투자자에 대한 정부의 구속력이 있는 사전 서면 약속을 위반하는지 여부, 그리고

¹ 이 부속서의 목적상, “재산상 이익”은 그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그러한 재산상 이익을 지칭한다.

다. 그 목적 및 맥락을 포함한 정부행위의 성격²

4. 공중보건 보호, 안전, 공중도덕, 환경 및 부동산 가격안정화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적용되는 당사자의 비차별적인 규제 행위는 제2항나호에 언급된 유형의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² 한국의 경우, 관련 고려사항은 공익을 위하여 투자자 또는 투자가 감수할 것으로 기대되어야 할 것을 넘어선 특별한 희생과 같은 불균형적인 부담을 투자자가 지는지 여부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각주는 그 밖의 당사자의 정부 행위의 성격에 대한 결정을 저해하지 않는다.